

서울특별시노량진수산물도매시장

업무규정중개정규정을 다음과같이

발령한다.

1999년 9 월 20 일

서울특별시장 고 권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업무규정중개정규정안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의 개정('99. 6. 30)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내용이 다소 막연하고 추상적인 일부 규정을 구체화·명확화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중도매업 허가취소 사유중 그 내용이 막연하고 추상적인 규정을 삭제함(안 제23조제4호).

○ 중도매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재력 또는 신용의 부족으로 거래관계자에게 현저한 손실을 끼침으로서 중도매업을 계속하는 것이 심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기타 경매 참가 거부사유, 반입물품의 제한사유 및 시설사용의 제한에 관한 규정중 일부 추상적이거나 막연한 문구를 정비함(안 제30조 및 제4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37조(거래질서의 유지) ① 누구든지 도매시장에서의 정상적인 거래와 시설물의 공공적 이용을 방해하거나 적절한 위생·환경의 유지를 저해하여서는 아니되며, 개설자는 도매시장에서의 거래질서가 유지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 ③(생략)

제62조(명령) ① 농림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도매시

상 및 공판장의 적정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토매시장 또는 방판장의 개선이나 토매시장 법인에 대하여 업무규정의 변경·업무처리의 개선 등 감사상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2.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기 타 : ① 신·구 조문 대비표, 별첨

② 규제심사 : 제4차 규제개혁위원회 심의필

서울특별시예규 제 674호

서울특별시노량진수산물부도매시장업무규정중개정규정안

서울특별시노량진수산물부도매시장업무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30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3호를 삭제한다.

1. 예치한 보증금 또는 담보 이상으로 거래한도를 초과 하는자

제47조중 "시장이 위생상 유해하다고 판정하거나 법령으로 그 소지나 거래가 제한 또는 금지된 물품"을 "법령으로 소지나 거래가 제한 또는 금지되거나 위생상 유해하다고 정한 물품"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 현행 | 개정 |
|--|--|
| <p>제23조(중도매입의 허가취소)①시장은 중도매입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경우에는 중도매입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p> <p>1.~3.(생략)</p> <p>4.중도매입무를 수행함에 있어 재력 또는 신용(삭제)의 부족으로 거래관계자에게 현저한 손실을 끼침으로써 중도매입을 계속하는 것이 심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p> <p>5.~6.(생략)</p> | <p>제23조(중도매입의 허가취소)①</p> <p>1.~3.(현행과 같음)</p> <p>5.~6.(현행과 같음)</p> |
| <p>제30조(경매참여거부 및 탈함금지)①도매법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중도매입 및 매매참가인 이외에는 경매참여를 거부하거나 경매참여시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p> <p>1. 거래한도를 초과하는 자</p> <p>2.(생략)</p> <p>3.시장이 특별히 경매참여를 제한한 자</p> <p>②(생략)</p> | <p>제30조(경매참여거부및탈함금지)①</p> <p>1. 예치한 보증금 또는 담보 이상으로 거래한도를 초과 하는자</p> <p>2.(현행과 같음)</p> <p><삭제></p> <p>②(현행과 같음)</p> |
| <p>제47조(반입물품의 제한)도매법인은 도매시장에 반입된 물품 중 시장이 위생상 유해하다고 판정하거나 법령으로 그 소지나 거래가 제한 또는 금지된 물품에 대하여는 이의 판매, 수탁을 거부하여야 한다.</p> | <p>제47조(반입물품의 제한)</p> <p>법령으로 소지나 거래가 제한 또는 금지되거나 위생상 유해하다고 정한 물품</p> |

서울특별시

우 100-744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전화 02)-3707-9394 /전송 02)-3707- 9399
 처리부서 : 농수산물통과(서소문별관9층) 과장 : 김경중 담당사무관 : 전명수 담당자 : 김석우

문서번호 농유51160-1563

시행일자 1999. 9. 10 ()

공개여부 ()

경유

수신 **법무수업관**

참조

| | | | |
|-------------|------------------|-------------|--------------------|
| 선 람 | 범무담당관 김석우 | 지 시 | 법제담당사무관 김석우 |
| 절 | 일자 시간 | 결 재 | 행정실장담당 김석우 |
| 수 | 번호 199 | 공 람 | 법제담당사무관 |
| 처 리 과 | | 공 람 | 법제담당사무관 |
| 담 당 자 | 이승재 | 실 사 일 | |
| 실 사 자 | | | |

제목 예규 “농수산물도매시장(가락동,양재동,노량진)업무규정” 발령의뢰

1. 농수산물도매시장(가락동,양재동,노량진)업무규정을 따로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방침서사본 1부

2. 서울특별시가락동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업무규정중개정규정안 1부

3. 서울특별시양재동양곡도매시장업무규정중개정규정안 1부

4. 서울특별시노량진수산물도매시장업무규정중개정규정안 1부.끝.

농 수 산 유통 과 장 기 경 경

서울특별시

우 100-744 서울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 전화 (02)3707-9394 / 전송3707-9399
 처리부서:농수산물유통과(시청별관9층), 과장:김경중, 담당사무관:전명수, 담당:강석우

| | | | |
|---------------------|------|----------------|--|
| 문서번호 농유 51160-1563 | 보존기간 | 년 | 시 장 |
| 시행일자 1999. 9. 0 (년) | 공개여부 | | 인재익 |
| (경유) | 국 장 | 전결 | |
| (제 1안) | 과 장 | 김경중 | 조직제도담당관 김영 법무담당관 심사관 |
| 수신 내부결재 | | | 유통관리담당사무관 김영 |
| 참조 | 기안자 | 강석우 | 협조 |
| | 심사자 | | 심사일 |

제목 **농수산물도매시장(가락동, 양재동, 노량진)업무규정 개정**

1. 농림부 시장51160-313('99.8.28)호 및 해양수산부 유통 53320-655('99.8.17)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개정 및 서울특별시농산물잔류 농약검사및이에따른손실보상등에관한조례 제정과 우리시 규제개혁확정과 제 정비에 따라 관련조항을 개정하고자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 률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주무부처인 농림부와 해양수산부의 개정승 인을 득하였기 따로붙임과 같이 관련도매시장의 업무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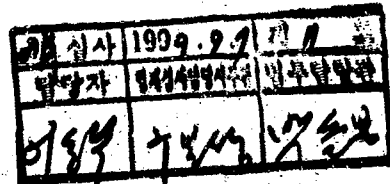
- 붙임 : 1. 서울특별시가락동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업무규정중개정규정안 1부
 2. 서울특별시양재동양곡도매시장업무규정중개정규정안 1부
 3. 서울특별시노량진수산물도매시장업무규정중개정규정안 1부.끝.

서울특별시가락동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업규정중개정규정안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의 개정('99. 6. 30) 및 서울특별시농산물산류농약검사및이에따른손실보상등에관한조례의 제정('99. 7. 31)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내용이 다소 막연하고 추상적인 일부 규정을 구체화·명확화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중도매업 허가취소 사유중 그 내용이 막연하고 추상적인 규정을 삭제함(안 제27조 제1항 제4호).

- 중도매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재력 또는 신용의 부족으로 거래관계자에게 현저한 손실을 끼침으로서 중도매업을 계속하는 것이 심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실효성을 상실한 도매시장법인의 거래량 및 가격의 게시의무를 폐지함(안 제47조제1항)

다. 쓰레기 유발부담금의 징수 대행자에 "상장애외품목 취급 중도매인"을 추가함(안 제51조의2제5항).

라. 식품위생상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장내 반입·유통되는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와 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55조의2)

마. 기타 경매 참가 거부사유, 반입물품의 제한사유 및 시설사용의 제한에 관한 규정중 일부 추상적이거나 막연한 문구를 정비함(안 제36조, 제55조 및 제6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37조(거래질서의 유지) ① 누구든지 도매시장에서의 정상적인 거래와 시설물의 공공적 이용을 방해하거나 적절한 위생·환경의 유지를 저해하여서는 아니되며, 개설자는 도매시장에서의 거래질서가 유지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 ③(생략)

제62조(명령) ① 농림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도매시장 및 공판장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의 개설자나 도매시장 법인에 대하여 업무규정의 변경·업무처리의 개선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기 타 : ①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② 규제심사 : 제4차 규제개혁위원회 심의필

서울특별시예규 제 690 호

서울특별시가락동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업무규정중개정규정안

서울특별시가락동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업무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3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3호를 삭제한다.

1. 예치한 보증금 또는 담보 이상으로 거래한도를 초과 하는자

제40조제3호의 “농림수산부장관” 을 “농림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으로 한다.

제47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51조의2제1항중 “농림수산부장관” 을 “농림부장관” 으로 하고, 동조제5항중 “도매법인” 을 “도매법인 또는 상장에외품목 취급 중도매인” 으로 한다.

제55조중 “사장이 위생상 유해하다고 판정하거나 법령으로 그 소지나 거래가 제한 또는 금지된 물품”을 “법령으로 소지나 거래가 제한 또는 금지되거나 위생상 유해하다고 정한 물품”으로 한다.

제5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5조의2(농산물 안전성 검사)①사장은 시장내 반입·유통되는 농산물에 대하여 식품위생상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잔류농약 간이속성 검사 및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사장은 제1항의 간이속성검사에서 “양성반응” 으로 판정된 농산물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이 규정한 식품위생 검사기관에 정밀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65조제1호 내지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화재등 재해의 예방, 교통의 정리 또는 시민 보건위생상 필요할 때
2. 불공정 거래, 환경저해, 공용시설 무단점용 등 도매시장 질서를 해칠 때
3.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제3자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하거나 위탁관리 하였을 때
4. 시설의 용도를 지정한 후 도매시장의 여건변경으로 시설의 용도가 변경되거나 시설을 철거하고자 할 때
5.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훼손하거나 멸실하였을 때
6. 사용료, 임대료, 관리비 등을 3회이상 체납하였을 때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 현행 | 개정 |
|--|---|
| <p>제27조(중도매입의 허가취소)①시장은 중도매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경우에는 중도매입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p> <p>1.~3.(생략)</p> <p>4.중도매입무를 수행함에 있어 재력 또는 신용의 부족으로 거래관계자에게 현저한 손실을 끼침으로써 중도매입을 계속하는 것이 심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p> <p>5.~7.(생략)</p> | <p>제27조(중도매입의 허가취소)①-----</p> <p>-----</p> <p>-----</p> <p>1.~3.(현행과 같음)</p> <p>(삭제)</p> <p>5.~7.(현행과 같음)</p> |
| <p>제36조(경매참가거부 및 답합금지)①도매법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 이외에는 경매참가를 거부하거나 경매참가시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p> <p>1. 거래한도를 초과하는 자</p> <p>2.(생략)</p> <p>3. 사장이 특별히 경매참가를 제한한 자</p> <p>②(생략)</p> | <p>제36조(경매참가거부 및 답합금지)①-----</p> <p>-----</p> <p>-----</p> <p>1. 예치한 보증금 또는 담보 이상으로 거래한도를 초과 하는자</p> <p>2.(현행과 같음)</p> <p>(삭제)</p> <p>②(현행과 같음)</p> |
| <p>제40조(대량입하품·표준규격품의 우대)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우선경매 실시 등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p> <p>1.~2.(생략)</p> <p>3. 농림수산부장관이 정하는 품질인증품</p> <p>4. (생략)</p> | <p>제40조(대량입하품·표준규격품의 우대)-----</p> <p>-----</p> <p>-----</p> <p>1.~2.(현행과 같음)</p> <p>3. 농림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p> <p>4. (생략)</p> |
| <p>제47조(유통정보 공개 등)①도매법인은 별지 제24호 서식에 의거 거래량 및 가격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p> <p>②(생략)</p> | <p>제47조(유통정보 공개 등)(삭제)</p> <p>②(현행과 같음)</p> |

| 현행 | 개정 |
|--|--|
| <p>제65조(시설사용의 규제)사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도매시장시설의 사용자에게 대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사용지정의 취소, 사용의 제한 또는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업무의 감독, 재해의 예방, 교통의 정리 또는 보건 위생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시장 질서를 해치거나 이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3.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이를 허용한 목적 또는 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목적의 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4. 시설의 용도를 지정한 후의 사정변경으로 그 사용이 불필요하거나 부적당하게 될 때 5.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을 멸실 혹은 파손하였을 때 6. 사용자 기타 납부금의 납입을 미안히 하였을 때 7. (생략) | <p>제65조(시설사용의 규제)----- -----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화재등 재해의 예방, 교통의 정리 또는 시민 보건위생상 필요할 때 2. 분포정 거래, 환경저해, 공용시설 무단점용 등 도매시장 질서를 해칠 때 3.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제3자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하거나 위탁관리 하였을 때 4. 시설의 용도를 지정한 후 도매시장의 여건변경으로 시설의 용도가 변경되거나 시설을 철거하고자 할 때 5.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훼손하거나 멸실하였을 때 6. 사용자, 임대료, 관리비 등을 3회이상 체납하였을 때 7. (현행과 같음) |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업무규정중개정규정안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의 개정('99. 6. 30)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내용이 다소 막연하고 추상적인 일부 규정을 구체화·명확화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중도매업 허가취소 사유중 그 내용이 막연하고 추상적인 일부 규정을 삭제함(안 제27조 제1항 제4호).

○ 중도매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재력 또는 신용의 부족으로 거래관계자에게 현저한 손실을 끼침으로서 중도매업을 계속하는 것이 심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실효성을 상실한 도매시장법인의 거래량 및 가격의 게시의무를 폐지함(안 제47조제1항)

다. 기타 경매 참가 거부사유, 반입물품의 제한사유 및 시설사용의 제한에 관한 규정중 일부 추상적이거나 막연한 문구를 정비함(안 제36조, 제55조 및 제6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37조(거래질서의 유지) ① 누구든지 도매시장에서의 정상적인 거래와 시설물의 공공적 이용을 방해하거나 적절한 위생·환경의 유지를 저해하여서는 아니되며, 개설자는 도매시장에서의 거래질서가 유지되도록 필

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 ③(생략)

제62조(명령) ① 농림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도매시장 및 공판장의 적정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의 개설자나 도매시장 법인에 대하여 업무규정의 변경·업무처리의 개선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기 타 : ①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② 규제심사 : 제4차 규제개혁위원회 심의필

서울특별시예규 제 671 호

서울특별시양재동양곡도매시장업무규정중개정규정안

서울특별시양재동양곡도매시장업무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3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3호를 삭제한다.

1. 예치한 보증금 또는 담보 이상으로 거래한도를 초과 하는자

제40조제3호의 “농림수산부장관” 을 “농림부장관” 으로 한다.

제47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55조중 “사장이 위생상 유해하다고 판정하거나 법령으로 그 소지나 거래가 제한 또는 금지된 물품”을 “법령으로 소지나 거래가 제한 또는 금지되거나 위생상 유해하다고 정한 물품”으로 한다.

제65조제1호 내지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화재등 재해의 예방, 교통의 정리 또는 시민 보건위생상 필요할 때
2. 불공정 거래, 환경저해, 공용시설 무단점용 등 도매시장 질서를 해칠 때
3.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제3자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하거나 위탁관리 하였을 때
4. 시설의 용도를 지정한 후 도매시장의 여건변경으로 시설의 용도가 변경되거나 시설을 철거하고자 할 때
5.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훼손하거나 멸실하였을 때
6. 사용료, 임대료, 관리비 등을 3회이상 체납하였을 때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 현행 | 개정 |
|---|---|
| <p>제27조(중도매업의 허가취소)①시장은 중도매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경우에는 중도매업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p> <p>1.~ 3.(생략)</p> <p>4. <u>중도매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재력 또는 신용의 부족으로 거래관계자에게 현저한 손실을 끼침으로써 중도매업을 계속하는 것이 심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u></p> <p>5.~7.(생략)</p> | <p>제27조(중도매업의 허가취소)①----- ----- -----</p> <p>1.~ 3.(현행과 같음)</p> <p><u>(삭제)</u></p> <p>5.~7.(현행과 같음)</p> |
| <p>제36조(경매참가거부 및 답합금지)①도매법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 이외에는 경매참가를 거부하거나 경매참가시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p> <p>1. <u>거래한도를 초과하는 자</u></p> <p>2.(생략)</p> <p>3. <u>사장이 특별히 경매참가를 제한한 자</u></p> <p>②(생략)</p> | <p>제36조(경매참가거부 및 답합금지)①----- ----- -----</p> <p>1. <u>예치한 보증금 또는 담보 이상으로 거래한도를 초과 하는자</u></p> <p>2.(현행과 같음)</p> <p><u>(삭제)</u></p> <p>②(현행과 같음)</p> |
| <p>제40조(대량입하품·표준규격품의 우대)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우선경매 실시 등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p> <p>1.~2.(생략)</p> <p>3. <u>농림수산부장관이 정하는 품질인증품</u></p> <p>4. (생략)</p> | <p>제40조(대량입하품·표준규격품의 우대)----- ----- -----</p> <p>1.~2.(현행과 같음)</p> <p>3. <u>농림부장관</u>-----</p> <p>4. (생략)</p> |
| <p>제47조(유통정보 공개 등)①도매법인은 별지 제24호 서식에 의거 거래량 및 가격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p> <p>②(생략)</p> | <p>제47조(유통정보 공개 등)(삭제)</p> <p>②(현행과 같음)</p> |

| 현행 | 개정 |
|--|---|
| <p>제55조(반입물품의 제한)도매법인은 도매시장에 반입된 물품중 <u>사장이 위생상 유해하다고 판정하거나 법령으로 그 소지나 거래가 제한 또는 금지된 물품에 대하여는</u> 이의 판매, 수탁을 거부하여야 한다.</p> | <p>제55조(반입물품의 제한)----- -----<u>법령으로 소지나 거래가 제한 또는 금지되거나 위생상 유해하다고 정한 물품</u>----- -----</p> |
| <p>제65조(시설사용의 규제)사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도매시장 시설의 사용자에 대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사용지정의 취소, 사용의 제한 또는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업무의 감독, 재해의 예방, 교통의 정리 또는 보건 위생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u> 2. <u>시장 질서를 해치거나 이를 해침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u> 3. <u>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이를 허용한 목적 또는 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목적의 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u> 4. <u>시설의 용도를 지정한 후의 사정변경으로 그 사용이 불필요하거나 부적당하게 된 때</u> 5. <u>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을 멸실 혹은 파손하였을 때</u> 6. <u>사용료 기타 납부금의 납입을 미안히 하였을 때</u> 7. (생략) | <p>제65조(시설사용의 규제)----- -----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화재등 재해의 예방, 교통의 정리 또는 시민 보건위생상 필요할 때</u> 2. <u>불공정 거래, 환경저해, 공용시설 무단점용 등 도매시장 질서를 해침 때</u> 3. <u>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제3자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하거나 위탁관리 하였을 때</u> 4. <u>시설의 용도를 지정한 후 도매시장의 여건변경으로 시설의 용도가 변경되거나 시설을 철거하고자 할 때</u> 5. <u>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멸손하거나 멸실하였을 때</u> 6. <u>사용료, 임대료, 관리비 등을 3회이상 체납하였을 때</u> 7. (현행과 같음) |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업무규정중개정규정안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의 개정('99. 6. 30)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내용이 다소 막연하고 추상적인 일부 규정을 구체화·명확화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중도매업 허가취소 사유중 그 내용이 막연하고 추상적인 규정을 삭제함(안 제23조제4호).

- 중도매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재력 또는 신용의 부족으로 거래관계자에게 현저한 손실을 끼침으로서 중도매업을 계속하는 것이 심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기타 경매 참가 거부사유, 반입물품의 제한사유 및 시설사용의 제한에 관한 규정중 일부 추상적이거나 막연한 문구를 정비함(안 제30조 및 제4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37조(거래질서의 유지) ① 누구든지 도매시장에서의 정상적인 거래와 시설물의 공공적 이용을 방해하거나 적절한 위생·환경의 유지를 저해하여서는 아니되며, 개설자는 도매시장에서의 거래질서가 유지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 ③(생략)

제62조(명령) ① 농림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도매시

장 및 공판장의 적정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의 개설자나 도매시장 법인에 대하여 업무규정의 변경·업무처리의 개선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기 타 : ① 신·구 조문 대비표, 별첨

② 규제심사 : 제4차 규제개혁위원회 심의필

서울특별시예규 제 67호

서울특별시노량진수산물도매시장업무규정중개정규정안

서울특별시노량진수산물도매시장업무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30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3호를 삭제한다.

1. 예치한 보증금 또는 담보 이상으로 거래한도를 초과 하는자

제47조중 “시장이 위생상 유해하다고 판정하거나 법령으로 그 소지나 거래가 제한 또는 금지된 물품”을 “법령으로 소지나 거래가 제한 또는 금지되거나 위생상 유해하다고 정한 물품”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 현행 | 개정 |
|--|---|
| <p>제23조(중도매업의 허가취소)①시장은 중도매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경우에는 중도매업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p> <p>1.~3.(생략)</p> <p>4.중도매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재력 또는 신용의 부족으로 거래관계자에게 현저한 손실을 끼침으로써 중도매업을 계속하는 것이 심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p> <p>5.~6.(생략)</p> | <p>제23조(중도매업의 허가취소)①----- ----- -----</p> <p>1.~3.(현행과 같음)</p> <p><삭제></p> <p>5.~6.(현행과 같음)</p> |
| <p>제30조(경매참여거부 및 담합금지)①도매법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 이외에는 경매참여를 거부하거나 경매참여시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p> <p>1. 거래한도를 초과하는 자</p> <p>2.(생략)</p> <p>3. 시장이 특별히 경매참여를 제한한 자</p> <p>②(생략)</p> | <p>제30조(경매참여거부및담합금지)①----- ----- -----</p> <p>1. 예치한 보증금 또는 담보 이상으로 거래한도를 초과 하는자</p> <p>2.(현행과 같음)</p> <p><삭제></p> <p>②(현행과 같음)</p> |
| <p>제47조(반입물품의 제한)도매법인은 도매시장에 반입된 물품 중 시장이 위생상 유해하다고 판정하거나 법령으로 그 소지나 거래가 제한 또는 금지된 물품에 대하여는 이의 판매, 수탁을 거부하여야 한다.</p> | <p>제47조(반입물품의 제한)----- ----- ----- ----- ----- -----</p> <p>법령으로 소지나 거래가 제한 또는 금지되거나 위생상 유해하다고 정한 물품-----</p> |